

April 30, 2026

중국 Meta의 Manus 인수 금지 및 거래 취소 결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I. 배경 및 개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이하 “발개위”) 산하 외상투자안전심사 공작기제판공실¹은 2026. 4. 27. Meta의 AI 에이전트 Manus에 대한 인수를 투자금지로 결정하고, 이미 종결된 거래의 취소(撤销)를 명하는 결정을 공개하였습니다.

본 건은 2021년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시행 이후 AI 분야에서 최초로 공개된 ‘투자금지’ 사례라는 점, 그리고 거래 종결(closing) 이후 이루어진 사후 원상회복(unwind) 명령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외상투자기술안보 규제 기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II. 중국 정부의 결정

Manus는 중국 베이징에서 설립된 후디에샤오잉(蝴蝶效应, Butterfly Effect)이 중국 내 핵심 기술 인력과 R&D를 활용하여 개발한 LLM 기반 AI 에이전트입니다. 후디에샤오잉은 2025년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하여 역외 구조로 전환하였고, 2025. 12. 30. Meta는 미화 약20억 달러에 Manus를 인수(이하 “**Manus 인수거래**”)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6년 초 Manus 인수거래는 종결(dosing)되었는데, 중국 외상투자안전심사 공작기제판공실(국가발전개혁위원회)은 2026. 4. 27. Manus 프로젝트 인수에 관하여 투자금지 및 거래 취소 결정(이하 “**발개위 결정문**”)을 공표하였습니다.

발개위 결정문은 다음과 같이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목]

外商投资安全审查工作机制办公室（国家发展改革委）对外资收购Manus项目作出安全审查决定

(외상투자안전심사 공작기제판공실[국가발전개혁위원회]은 외자에 의한 Manus 프로젝트 인수에 관하여 안전심사 결정을 내림)

1 外商投资安全审查工作机制办公室 中国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 제3조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내에 설치되었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가 주도하는 협의체의 성격을 가짐. 미국의 CFIUS 와 유사한 기능을 함.

[본 문]

外商投资安全审查工作机制办公室（国家发展改革委）依法依规对外资收购Manus项目作出禁止投资决定，要求当事人撤销该收购交易。

(외상투자안전심사 공작기제판공실[국가발전개혁위원회]은 법령에 따라 외자에 의한 Manus 프로젝트 인수에 대하여 투자금지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해당 인수 거래의 취소를 요구함)

발개위 결정문 원문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Meta, Butterfly Effect 등 당사자의 명칭(제품명인 Manus 만 언급)
- 구체적 위반 사유 및 적용된 법조문
- 거래 취소 이행기한
- 불복·재심사 절차 안내

III. 사건의 진행 경과와 발개위 결정문의 의의

1. Manus 인수거래의 주요 진행경과와 거래 구조

2022	샤오홍(肖弘: Xiao Hong)이 베이징에서 후디에샤오잉(蝴蝶效应: Butterfly Effect) 설립 — 중국 내 핵심기술 R&D 시작
2025.3	AI agent인 Manus 정식 출시 — 시연 영상 공개 후 폭발적 반응, 체험코드 수만 위안에 거래됨
2025.4	미국 venture capital인 Benchmark 주도 \$7,500만 B라운드 투자 완료 후디에샤오잉의 회사 가치는 \$8,500만에서 \$5억로 급등하였음
2025.5	미국 재무부가 Benchmark의 후디에샤오잉(Manus) 투자에 대한 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 (OISP) ² 심사를 한다는 언론 보도
2025.6	후디에샤오잉(Butterfly Effect) 본사 싱가포르로 이전 — Manus의 운영주체가 Butterfly Effect Pte.로 변경됨
2025.7	중국 국내팀 대규모 정리 — 120명 중 약 40명의 핵심 기술인력 싱가포르 이전, 국내 SNS 계정 삭제·홈페이지 중국 IP 차단

² CFIUS가 외국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심사하는 것임에 반하여 OISP는 미국투자자가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심사

2025.12.30	Meta-Manus 인수 발표 (약 \$20억 규모)
2026.1.5	Manus, 중국 내 사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개시
2026.1.8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야동(何亚东), 정례 브리핑에서 본건 인수에 평가조사(評估调查) 착수 공표 — 수출통제·기술수출입·대외투자 관련 법령 적합성 평가
2026.1초	거래 종결(Closing) 완료 — Meta가 Manus의 일부 기술을 자사 제품에 통합 시작
2026.3	발개위, 양측 고위임원 소환 면담 → 기술이전·데이터안전 리스크 추진 중단 요구. Manus 공동창업자에 대한 출국금지(exit ban) 발동
2026.4.27	외상투자안전심사 공작기제판공실 → 「투자금지」 결정 공표, 거래 취소 명령 (정부정보공개 No. 20623)

Meta의 Manus 인수거래는 **acquire** 모델을 일정부분 채택한 거래로 추정됩니다. Acquire는 "Acquire(인수)"와 "Hire(채용)"를 합친 신조어로, 회사 자체보다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인 인수 방식입니다.³

2. 발개위 결정문의 의의

- **최초 사례:** 발개위 결정문은 2021년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시행 이래 AI 분야에서 공개된 최초의 「투자금지」 결정입니다. 동 규정상 심사 결과는 ① 통과, ② 조건부 통과, ③ 투자금지 3 단계로 구분되며, 「투자금지」는 가장 엄격한 결정에 해당합니다.
- **「Singapore Washing」에 대한 최초 부정:** 중국 내 R&D·역외 shell 전환·외국인 수의 3단 구조에 대해 중국 당국이 공개적으로 「실질우선·투시심사(穿透审查)」 적용을 천명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Closing 후 Unwind 명령:** 이미 종결된 cross-border 거래에 대한 사후 원상회복 명령은 매우 이례적이며, 집행상 상당한 기술적 곤란이 예상됩니다.

³ “acquire” 모델에서 인수자는 회사를 직접 매수하지 않고, 지분이나 지배권도 취득하지 않으며, 대상 회사는 형식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계속 존재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핵심 인력이 집단적으로 인수자 회사로 이동하고, 핵심 역량은 기술 라이선스나 협력 계약을 통해 이전됩니다. 그 결과, acquire 거래는 법적으로 지분인수 또는 자산인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업적 협력 및 인력 이동으로 구성되며, 통상적으로 규제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매출기준과 같은 정량적 기준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결합 심사나 외국인투자 심사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개위 결정문이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미·중 양측 동시 규제:** 미국의 OISP 심사(2025.5.~)와 중국의 외상투자안전심사 (Foreign Investment Security Review: 이하 “FISR”) 금지결정(2026.4.)이 같은 거래를 양방향에서 규제⁴한 첫 공개적 사례입니다.

IV. 법률적 핵심 쟁점 및 절차적 흐름

1. 주요 쟁점 분석

발개위 결정문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위반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아래는 일부 추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분석입니다. 다만 발개위 결정문, 상무부 선행 발언, CCTV, 환구시보(环球时报) 등 관영매체 보도 및 중국 로펌 분석 등을 종합하면, 중국 당국은 「중국 기원 AI 핵심사업·기술·인력·데이터가 역외 구조조정을 통해 해외로 이전된 후 외국기업에 지배권이 넘어간 거래」로 판단하여, FISR 신고 의무 위반을 발개위 결정문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Manus가 중국의 엔지니어·인프라·초기 기술·데이터에 기반해 성장한 뒤 그 개발사인 후디에샤오잉(蝴蝶效应: (Butterfly Effect)이 싱가포르로 이전하고(소위 Singapore Washing), Meta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FISR 등 중국 법규를 위반한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정 쟁점	문제되는 사실관계	적용 법규	평가
FISR(외상투자 안전심사) 미신고 / 심사 전 Closing	AI 핵심사업에 대한 외자 지배권 취득(중국 내 기술·팀·IP를 싱가포르 법인으로 이전 후 외국기업이 그 법인 또는 사업을 인수)이 신고대상임에도 심사 완료 전 Closing 진행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제4·7·8·9조	만약 미신고 또는 심사 전 Closing 했다면,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절차 하자가 될 수 있음. 금지·원상회복 근거 명확함
허위·누락 또는 투자방안 변경	신고 시 중국 기원 기술·데이터·인력 이전 미설명 또는 Closing 후 통합 방식 변경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제14·17조	(만약) 기존 FISR 승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발개위가 이를 문제삼는 것일 수도 있음

⁴ 다만, 미국의 OISP심사는 후디에샤오잉(Butterfly Effect)이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면서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기술수출 허가 흠결	중국 개발 AI 기술·기술비밀이 해외 법인 또는 Meta로 이전된 경우	기술수출입관리조례, 수출금지 수출제한 기술목록 (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 技术目录): 일정한 기술은 수출 자체를 금지하고 일정한 기술은 수출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수출금지, 수출 제한 기술목록상 LLM 기반 AI agent기술은 금지목록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지·제한기술 해당성 여부는 추후 더 면밀한 검토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불확실
데이터 국외이전 절차 흠결	중국 내 사용자 로그·학습데이터·개인정보가 해외 제공 또는 접근 허용	데이터 국외이전 규정(2024),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안전법	데이터 유형·규모·수신자 접근권에 따라 인터넷정보판공실(CAC) 안전평가/표준계약 여부 판단 필요

(이론상 기업결합심사 흠결도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별도 분석하지 않음).

2. 「Singapore Washing」의 문제

- 「등록지가 어디인가」보다 「어디서 무엇이 개발되었는가」가 관할 판단 기준임
- Manus는 2025.6 싱가포르 이전 전 이미 핵심기술 R&D를 완료하였으므로, 이전 시점에 이미 기술수출·FISR 문제가 발생함
- 심사요소: 창업자·핵심팀 국적, IP 발생지, R&D 위치, 데이터 저장·처리 위치, 과거 중국 내 운영, offshore 구조조정 과정 전반

3. Meta 측 항변 가능성과 한계

Meta 입장: 「거래는 적용 법령을 완전히 준수하였으며, 적절한 해결을 기대함」.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문서는 공개되지 않음. 다음과 같은 증빙이 있으면, Meta가 적법 절차 항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FISR 신고서 및 통과 결정문
- 거래구조도 및 기술·IP·데이터 이전 설명자료
- 기술수출 허가/등록 또는 비해당 판단서

- CAC 데이터 출경 절차 이행 증빙 또는 면제 근거
- Closing 전후 Integration 제한 관련 자료

4. 불이행 시 제재

- 벌금 부과
- 중국 내 사업 제한
- 관련 주체의 외상투자 활동 금지 — 향후 투자·파이낸싱 완전 차단
- 관련 책임자 개인 법적 책임 (이미 공동창업자 출국금지 발동됨)
- 국가 신용정보시스템 불량 기록 및 합동징계 대상 등재

5. 참고: 외상투자 안전심사 관련 법률구조

- **주된 근거 법규:**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 발개위·상무부 연명령 제37호 (2020.12. 공포, 2021.1. 시행)
- **상위 수권 법률:**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
- **신고대상 분야 (제4조):** (i) 군공(軍工) 및 군공 지원 산업, (ii) 국가 안전과 관련된 다음 분야: (a) 중요 농산품; (b) 중요 에너지 및 자원; (c) 중대 장비제조; (d) 중요 기반시설; (e) 중요 운수서비스; (f) 중요 문화제품 및 서비스; (g) **중요 정보기술 및 인터넷 제품·서비스**; (h) 중요 금융서비스; (i) **핵심기술(关键技术)**; (j) 기타 중요 분야
- **실질 지배권 기준:** 50% 초과 지분 + 의결권·이사회·경영·인사·재무·기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 **Standstill 의무 (제8조):** 심사 불요 또는 통과 결정 전까지는 투자 실시 불가. 일반심사(30영업일)·특별심사(60영업일+연장) 진행 중에도 동일
- **실질우선 심사:** 「싱가포르 법인 인수」라는 형식보다 중국 내 R&D 기원·핵심팀·IP·데이터의 실질적 해외 이전 여부에 초점
- **금지 결정 후 원상회복 명령의 실질(제12조, 제16조):** 규정상 「기한 내 지분·자산 처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통한 투자 실시 전 상태로의 회복」 명령이 가능함.
- **본건 인수거래 취소 명령의 경우 FISR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예상 조치(이론상):** 매각대금 전액 반환 및 지분 소유관계 원상회복; 이전된 데이터·기술의 격리 및 삭제;

Meta 시스템에 통합된 코드·모델의 분리 처리; 발개위·상무부·CAC·외환당국 합동 현장조사로 원상회복 확인 등

- **실질적 한계:** Manus의 가치는 자산이 아닌 「코드·모델·데이터·핵심 엔지니어의 인적자본」에 있음. Closing 후 기술이 이미 Meta 시스템에 통합된 경우 완전한 원상회복은 기술적·물리적으로 매우 곤란함. 즉, 주식·지분 반환은 문서 처리로 가능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데이터·코드 삭제는 제3자에 의한 기술감사가 필요할 것이며, 이미 Meta 학습데이터에 흡수된 경우 사실상 분리 불가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나아가 핵심 엔지니어가 Meta에 재직 중인 경우 기술이 인력을 따라가는 사실효과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차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FISR 외에도 다음 법규 위반 여부도 중요:

「기술수출입관리조례」, 「데이터 국외이전 촉진·규범화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안전법」, 「대외무역법」 및 「수출금지 수출제한 기술목록」, 「반독점법」

IV. 실무적 시사점

1. 기업 관점

- **FISR clearance를 독립적인 Closing Condition으로 설정:** 심사 완료 전 Standstill 의무 엄수
- **Pre-closing integration 엄격 제한:** 소스코드·모델·데이터·핵심인력에 대한 인수자 측의 접근권을 Closing 전 개방하지 말 것 — 사후 금지 시 원상회복 사실상 불가능
- **FISR + 기술수출 + 데이터 국외이전 실사 병렬 진행:** FISR 통과가 여타 절차를 대체하지 않음. 별도 취득 필요한 인허가 절차들임
- **계약상 Unwind 시나리오 내재화:** 중국 승인 미취득·취소·사후 금지에 대비
 - Longstop date 설정 및 자동 termination 조항
 - Reverse termination fee, Escrow/Holdback, 강화된 Indemnity 별도 규정
 - 데이터·기술 반환·삭제 covenant 및 제3자 기술감사 조항
 - Fraud carve-out 및 매도인 측 합규(compliance) 진술보장의 명확화
- **중국 기원 deep-tech 기업:** IP chain-of-title, 수출금지 수출제한 기술목록 해당성, 데이터 mapping, 국외수신자 접근권을 사전에 문서화하여야 함

2. 규제·정책 관점

- 본건은 단일 사례를 넘어 **AI 분야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국 당국이 인수(M&A) 자체와 기술 이전 행위의 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하여 기술 수출 통제의 범위에 대해 실질적 확장을 가져옴
- 중국 당국이 「**Singapore Washing**」을 명시적으로 봉쇄
- **미·중 대칭적 규제 강화 구도 정착**: 美 CFIUS + OISP ↔ 中 FISR + 기술수출통제의 양방향 규제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
- **향후 가이드라인 법제화 필요성**: AI·데이터·핵심기술 기업의 역외 구조 재편 시 FISR 사전 신고 기준·실질심사 기준 명확화가 시장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요구됨
- 추후 밝혀질 사실관계를 통해 본건이 AI분야에 한정되어 해석될 이슈가 아닐 경우, AI 분야 외의 다양한 미중 경쟁 분야로 이러한 대립구조가 확산될 가능성도 고려 필요

관련 구성원

권대식

변호사

T 86.10.6461.3650

E daeshik.kwon@bkl.co.kr

김옥

외국변호사(중국)

T 86.10.6461.3657

E yu.jin@bkl.co.kr

김성욱

변호사

T 02.3404.7654

E sungwook.kim@bkl.co.kr

황호성

전문위원

T 02.3404.7488

E hosung.hwang@bkl.co.kr

김지이나

변호사

T 02.3404.0698

E jeena.kim@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